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소홀 및 회의결과 미공개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따라 원아 수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원아 수 100명 미만은 5명 이상 8명 이하, 원아 수 1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길라잡이(2018.12. 경기도교육청 발행)」에 따르면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은 '선출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공고 - 후보자 등록 - 선거인 명부 작성(투표 미실시의 경우 생략) - 선거공보 - 투표실시(교원위원의 경우 투표 또는 추천) - 당선자 공고(교원위원의 경우 원장 위촉)'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아의 보건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든유치원에서는 2018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법에서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위원의 정수를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명(학부모위원 9명, 교원위원 4명)으로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 관련 지침에서 제시한 행정 절차 및 관계 서류(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선출 공고,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없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유치원 규칙 공시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관련 정보(유치원 규칙, 원비 및예·결산 등 7가지 항목)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및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2015.2.24.)), 「2016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21호(2016.07.07.))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정규 담임교사가 5개 영역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교육부 2016.2.) 및 「2016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경기도교육청 2016.2.),「2016~ 2018 경기유아교육 운영계획(경기유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은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바깥놀이, 자유선택활동 등 놀이 중심 활동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은 1일 교육과정(4~5시간) 포함 8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운영 시간 내에 특성화 활동 및 영어(외국어 포함)와 코딩교육은 금지하여야 하며, 유아 1인당 1일 1프로그램(1시간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2016~ 2018 경기유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요건을 갖춘 자를 유치원운영 위원회 자문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장은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 작성.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규칙 정보공시 부적정

이든유치원에서는 유치원알리미에 '이든유치원 규칙'을 공시하면서 관할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이든유치원 규칙(제정 2017.10.31.)'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내용이 다른 2018.3.2.자 제정 '이든유치원 규칙'을 공시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관리·운영 부적정

이든유치원은 2018학년도에 기본교육(누리)과정 종료(13:00시) 이후 유치원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특성화 과정(체육, 음악)을 13:00 ~ 14:30에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원아를 대상으로 별도로 선택적 방과후과정(현대무용, 레고, 체육, 수학, 영어, 퍼포먼스 미술)을 14:30 ~16:00에 운영하여, 방과후 과정에 참여한 일부 원아에 대하여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1인당 1일 1프로그램(1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특성화활동을 지양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유치원 혁신 운영방향(「경기유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매년발행)'의 지침 내용을 소홀히 한사실이 있다.

3. 방과후 과정 강사 성범죄 등 조회 부적정

이든유치원에서는 2018학년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방과후강사 채용에 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강사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방과후 과정 강사 계약 체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班1]	방과후	과정	강사	성범죄	등	조회	미실시	현황
------	-----	----	----	-----	---	----	-----	----

학년도	프로그램명	수업형태 구분	강사명	범죄경력 등 조회 확인여부	비고
	음악	특성화	000	х	
	체육	특성화	000	Х	
	퍼포먼스 미술	방과후	000	Х	
2018	레고	방과후	000	X	
	체육	방과후	000	Х	
	현대무용	방과후	000	Х	
	수학	방과후	000	X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규칙 공시 및 방과후과정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및 보 전

제 목 급여 지급 등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에 근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근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근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제33조(지출의 방법) 제2항에 근거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다.

1. 일부 교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이든유치원은 [표 2] 와 같이 2018.12월~2019.2월 기간동안 원장 ○○○와 교사 ○○ ○의 급여 총 ①7,021,500원을 과다 지급하고 금 ⓒ1,811,550원을 감사계획 통보 후 실 지감사 실시 전 (2019.7.4.) 유치원회계에 보전한 사실이 있다.(금 5,209,950원 보전 조 치 필요)

[표2] 2018학년도 일부 교직원 급여 부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직	이름	지급월	기지급 급여 (<u>@</u>)	정당 급여 (®)	부당 지급 급여 (©=A-B)	비고
원장	000	2018.12월	14,160,070	12,327,840	1,832,230	
원장	000	2019.1월	14,160,070	12,327,840	1,832,230	

직	이름	지급월	기지급 급여 (<u>(</u> A)	정당 급여 (®)	부당 지급 급여 (©=A-B)	비고
원장	000	2019.2월	14,160,070	12,327,840	1,832,230	
교사 및 행정관리	000	2018.12월	9,334,080	8,825,810	508,270	
교사 및 행정관리	000	2019.1월	9,334,080	8,825,810	508,270	
교사 및 행정관리	000	2019.2월	9,334,080	8,825,810	508,270	
	합계		70,482,450	63,460,950	7,021,500	

2. 사학연금 납부 부적정

이든유치원은 [표 3] 과 같이 사학연금 부담금을 총 22일 지체 납부하여 연체금 총 4,04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3] 사학연금 연체 금액 내역

납부일	연체일수	연체 금액(단위:원)	비고
2016-08-30	2일	2,850	2018.8월분
2017-10-31	2일	1,190	2018.10월분
7	합계	©4,040	

조치할 사항 이든유치원장은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집행한 급여 및 사학연금 연체 금액 총 5,213,990원(①+①-ⓒ)을 유치원회계에 세입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전)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급여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및 회 수

제 목 무상급식지원금 집행 부적정(교직원 급식비)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경기도교육청 「2018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수익자부담급식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후 징수하여야 하고, 경기도교육청「2016~2018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지원금은 가능한 식품비로 전액 편성 및 집행하여 급식의 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우유, 간식, 요리수업 등 중식 이외의 항목에는 집행할 수 없다. 급식지원금 및 원아 수익자부담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로 집행할 수 없고, 교직원에게 급식비 징수 없이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자문을 거쳐 별도의 예산항목을 설정하여 지출 및 결산하는 등적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든유치원에서는 2018회계연도 교직원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유치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교직원 급식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붙임과 같이 무상급식지원금 집행액 외에 유치원회계에서 급식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고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교직원 급식비 12,812,800원(2018년도 무상급식지원단가 2,600원×22명(급식일지)×224일(급식일지))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지원금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무상 급식지원금 12,812,8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예·결산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 세출의정의) 및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제23조(결산) 제3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명시해야 하며, 「사립학교법」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 결산 업무 및 현금출납부 작성 부적정

이든유치원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매년 5월 29일) 관할청에 결산서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아래 [표4]와 같이 관할청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상 결산액 및 목별 결산액을 현금출납부 상 총 지출액과 각 목별 지출액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며 결산과목 중 '교원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및 '직원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를 현금출납부 작성 시, 계정과목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작성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4]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과 현금출납지출액 비교

(단위 : 원)

 관	항	 목	ᄓᄉᅺᅛᅅᄱ	워그츠나TJ츠애/p\	차액(A-B)
			세출결산액(A)	현금출납지출액(B)	<u> </u>
인건비	교원인건비	급여	511,152,024	673,654,236	-19,462,212
인건비	직원인건비	급여	143,040,000		
인건비	교원인건비	수당	78,000,000	-	78,000,000
인건비	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	2,252,600	3,715,100	_
인건비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1,462,500		
인건비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31,516,200	57,403,080	-25,886,880
인건비	그밖의인건비	그밖의인건비	50,400,000	79,503,050	-29,103,050
	인건비 소계		817,823,324	814,275,466	3,547,858
운영비	관리운영비	공통운영비	40,442,980	39,510,080	932,900
운영비	관리운영비	수수료제세공과금	23,028,545	23,721,445	-692,900
운영비	관리운영비	연료비	7,037,730	7,037,730	-
운영비	관리운영비	여비	4,800	4,800	-
운영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3,497,800	3,497,800	-
	운영비 소계		74,011,855	73,771,855	240,000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교사연구연수비	840,000	840,000	-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교재교구구입비	184,830,076	184,830,076	-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행사비	16,640,720	16,640,722	-2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복리비	17,778,300	17,778,300	-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급간식비	75,167,959	77,254,839	-2,086,880
	일반교육활동비 소격		295,257,055	297,343,937	-2,086,882
선택적교육활동비	방과후교육 돌 봄비	방과후교육 돌 봄비	36,665,900	46,982,280	-10,316,380
선택적교육활동비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특성화비	139,764,500	130,911,275	8,853,225
선택적교육활동비	그밖의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8,093,000	7,687,500	405,500
선택적교육활동비	그밖의교육활동비	통학차량이용비	21,847,700	23,283,036	-1,435,336
선택적교육활동비	그밖의교육활동비	특별급간식비	19,499,990	19,499,991	-1
 선택적교 육활동 비	그밖의교육활동비	수익자부담재원	8,099,000	6,650,000	1,449,000
	선택적교육활동비 소	 계	233,970,090	235,014,082	-1,043,992
 반환금	반환금	수익자반환금	-	416,984	-416,984
 시설설비비	시설비	신증축비	-	77,143,000	-77,143,000
시설설비비	시설비	유지비	80,173,970	3,270,970	76,903,000
시설설비비	자산구입비	자산취득비	59,417,437	59,417,437	-
	 !환금, 시설설비비 소		139,591,407	140,248,391	-656,984
	<u> </u>		1,560,653,731	1,560,653,731	0
			,,,-	,,,	

2. 학부모부담경비(입학금, 원복비 등 일부) 회계 미반영

이든유치원에서 [표5]와 같이 2018학년도 학부모부담경비(입학금, 원복비 등 일부) 9,725,789원(이자 포함)을 관할청에 보고된 유치원명의 계좌로 수납하였으나 유치원회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9,722,225원을 2019. 3. 1. 유치원 교비계좌로 여입 조치한 후, 유치원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복비 4,686,000원을 직접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039,789원을 2018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여 2018학년도 원아를 위한 경비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5]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과 현금출납지출액 비교

(단위 : 원)

수납항목	수납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입학금	3,760,000	-	3,760,000	
원복비	4,686,000	4,686,000	-	
원비	1,224,500	-	1,224,500	
이자	55,289	-	55,289	
합계	9,725,789	4,686,000	5,039,789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예·결산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원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원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④에 의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적힌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며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제10조③에 의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든유치원은 [표6]과 같이 2018학년도에 매입한 금액 중 ○○○○교육외 5개 업체와 총 213,169,940원(♠)을 거래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액은 62,727,340원(฿)으로 차액 150,442,600원(Ĉ=♠-฿)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표6] 계좌거래총액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상이 내역

(단위: 원)

연번	사업자명	대표자 명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기간	계좌거래총액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	차액(세금미 신고 거래액)	비고
1	0000 교육	000	***_**	2018.10.17	7,604,000	-	7,604,000	
2	00000 교육사	000	***_**	2018.6.1.~ 2018.12.28	42,829,940	26,125,340	16,704,600	
3	부천○○	000	***_**_****	2018.4.10.~ 2019.1.31	43,776,000	25,822,000	17,954,000	
4	0000	000	***_**	2018.4.30.~ 2019.1.31	49,860,000	-	49,860,000	수취인 : ○○○
5	○○체육	000	***_**	2018.4.30.~ 2019.1.31	52,160,000	-	52,160,000	
6	0000	000	***_**	2018.4.30.~ 2019.1.31	16,940,000	10,780,000	6,160,000	
합계					213,169,940	62,727,340	150,442,600	

- ①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액 총 150,442,600원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및 보 전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설립자 부담분 공과금 등 지출)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동법 시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따라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 및 기관 운영 등 유치원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집행을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회계 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든유치원에서는 아래 [표7], [표8], [표9]과 같이 2018년 3월1일자 개원 이전에 사용한 공공요금(수도·가스·전기요금)에 대해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유치원교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고, 개원 이후 유치원의 공공요금 납부시 납부기일내미지출로 인한 연체·가산금이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유치원교비에서 일괄 지출하는 등 총 4,868,258원(=①305,470원+①2,485,534원+©2,077,254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표10]과 같이 유치원 건물내 '학원*(유치원 건물 1층)'으로 사용예정 구역에 대해, 2018.1월~4월분 전기요금 ②364,320원을 유치원교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으나, 감사계획 통보후 실지감사 실시전(2019.7.1.)에 364,320원을 유치원교비로 보전하였다.

※ ○○어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국제회(실용외국어), 설립·운영자 ○○○, 2019.4.5. 학원운영등록(제○○○○호), 감사수감기간 2018.3월~2019.2월 미운영.

【표 7】 수도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3-17	104,960	104,96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1.15.~2017.12.14.)
2	2018.2월	2018-03-17	50,680	50,68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2.15.~2018.1.14.)
3	2018.3월	2018-03-17	52,630	52,63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1.15.~2018.2.14.)
4	2018.4월	2018-07-16	114,640	57,32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2.15.~2018.3.14.) 3.1.~3.14. 일할계산 57,320원 제외
			3,440	3,440	연체가산금
5	2018.5월	2018-07-16	452,820	13,170	연체가산금
6	2018.6월	2018-07-16	378,010	10,990	연체가산금
7	2018.12월	2019-01-31	422,340	12,280	연체가산금
	합계		1,579,520	∋305,470	

【표 8】 가스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4-19	1,553,770	1,553,77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2.10.~2018.1.09.)
2	2018.2월	2018-04-19	578,580	578,58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1.10.~2018.2.09.)
3	2018.3월	2018-04-19	463,510	314,525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2.10.~2018.3.09.) 3.1.~3.9. 일할계산 148,985원 제외
4	2018.4월	2018-04-19	569,550	38,659	연체가산금
	합계		3,165,410	©2,485,534	

【표 9】전기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3-17	633,080	633,08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2.05.~2018.1.04.)
2	2018.2월	2018-03-17	800,210	800,21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1.05.~2018.2.04.)
3	2018.3월	2018-03-17	695,148	595,841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2.05.~2018.3.04.) 3.1.~3.4. 일할계산 99,307원 제외
			8,642	8,642	연체가산금
6	2018.7월	2018-07-18	903,530	9,111	연체가산금
7	2018.8월	2018-08-17	980,040	13,676	연체가산금
9	2019.2월	2019-02-25	999,390	16,694	연체가산금
	소계		7,219,680	©2,077,254	

【표 10】 유치원내 학원 구역 전기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3-26	114,420	114,420	유치원내 (1층)
2	2018.2월	2018-03-26	91,650	91,650	학원구역 전기요금
3	2018.3월	2018-03-26	76,910	76,910	※ 감사계획 통보후
4	2018.4월	2018-04-19	81,340	81,340	감사실시전(19.7.1.) 보전완료
합 계			364,320	⊜364,320	

조치할 사항 이든유치원장은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회계 업무에 철 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집행한 공공요금 총 4,868,258원(¬+©+©-©)을 유 치원회계에 세입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전)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앨범제작비)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부담 수입(앨범제작비)을 세입(징수·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미편성하여 실제 성장앨범 제작과 관련한 회계 업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및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제2호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2012. 11. 1.이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설계서는 적정한 공사비의 산출근거가 되고, 계약을 맺은 후에는 공사과정에서 사용자재의 품질과 규격 등의 일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검사에서 계약위반 및 부당시공의 판 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계약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8조(보증금)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제1항에 의거

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시에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가 있고",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든유치원에서는 [표 11]의 내역과 같이 '내부 환경개선(4층 강당 무대설치 등)'계약금액 57,530,000원 공사에 대해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설계도서(공사용 도면, 설계명세서 시방서 등) 및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보험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 및 준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계약업체 : ○○종합건설(***-**-*****) 2019.4.19.자 폐업상태(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표 11] 내부 환경개선 공사 현황

일자	적요	계정과목	증빙	구분	지출액(원)	지적사상
2018/04/06	○○○(○○종합건설/내 부공사비)	신증축비	119	기성금	29,030,000	1. 무자격 업체 계약체결 2. 설계도서 미작성 3. 계약보증금 미징구 4.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5.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2018/05/08	○○○(○○종합건설/공 사비)	신증축비	262	잔금	28,500,000	
합 계					57,530,000	

-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시설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